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24,560,907	9,736,827
일반회계	241,084,327	7,232,530
특별회계	83,476,580	2,504,297
공기업특별회계	7,829,770	234,893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7,829,770	234,893
기타특별회계	75,646,810	2,269,40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020,750	300,62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58,172	16,745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064,026	31,921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32,802,913	984,087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0,680,096	320,40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615,621	168,469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159,838	64,795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2,326,255	369,788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397,239	11,917
기반시설특별회계	21,900	65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생 략"

제 4 조 "생 략"

제 5 조 "생 략"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64,72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